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943호)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988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1.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및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근거 마련	5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9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7.
- (3) 회 부 일 : 2024.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범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채납자는 채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

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98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28.
- (3) 회 부 일 : 2024. 11.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범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채납자는 채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

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부당이득 징수금 채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및 수입물품 강제 징수 위탁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채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의안번호 제5943호)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의안번호 제5988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서미화의원안(제2205943호)	서미화의원안(제2205988호)
		제8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채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채납한 사람	제83조의2(불법개설기관 고액채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요청)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u> <u>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u> <u>1.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 경우</u> <u>2. 제1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상 체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u>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위탁을 철회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1.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 경우</u> <u>2. 제1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등으로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사유가 해소된 경우</u> <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u>③ 제1항에서 규정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의 철회 및 그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 시행일(2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의료법」 제4조 및 제33조1), 「약사법」 제6조·제20조 및 제21조2)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약사·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명의 또는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의료인 또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이하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 제57조3)에 따라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

1)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중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약사법」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

여에 대해 환수결정 및 징수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0년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부당이득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7.64%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재산은닉 등에 따라 채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로 나타나는 등 채납자의 납부책임 면탈 행위에 따라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부당이득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2024.11.30. 기준)

연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계	1,037	2,571,347	196,412	7.64
2015	165	302,719	16,813	5.55
2016	203	382,124	24,360	6.37
2017	208	445,619	19,860	4.46
2018	112	178,167	23,588	13.24
2019	104	338,485	19,704	5.82
2020	73	300,248	23,053	7.68
2021	32	35,170	16,516	46.96
2022	31	131,855	14,965	11.35
2023	55	187,320	17,653	9.42
2024	54	269,640	19,900	7.3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하는 약국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 개정안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운영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당 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타법상의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 먼저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4), 「지방세징수

4) 「국세징수법」 제113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3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

법」 5), 「관세법」 6)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국세, 관세) 또는 3천만원(지방세)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관세법」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

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⁸⁾에서는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 및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음으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⁹⁾, 「지방

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9) 「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세징수법」 10)에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국세) 또는 1천만원 이상(지방세)인 경우에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11)에서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체납처분 위탁이 있는 경우 해당물품의 유치·매각을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운영에 따라 환수결정된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재산을 해외 등으로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통해 부당이득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두 개정안은 각각 「출입국관리법」과 「관세법」의 개정

10)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11)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의 개정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944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유치·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987호)이 제출되어 현재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둘째, 세관장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강제징수하고 이를 유치·매각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대해 「관세법」에서는 조세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위탁된 수입물품에 대해 유치·매각·국고귀속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은 조세채권이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사인 간의 일반채권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강제징수 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개정안에서는 출국금지 요청 또는 강제징수 위탁 대상인 체납자의 기준을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해제 요청 및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 철회의 사유로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

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57조의2 및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이득 징수금 채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및 공개 제외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이해됨.¹²⁾ 다만, 개정안과 같이 채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즉시 출국금지 해제 요청 및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 철회를 하도록 규정할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 채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다만, 「국세징수법」의 입법례와 같이 출국금지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세부 요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채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채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채납자의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채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채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채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채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채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4. 채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채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부당이득징수금채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 「관세법」은 관세등 조세 부과·징수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민에게 침익적 행위인 강제징수 등이 가능함. 그러나 부당이득 징수금은 조세 채권이 아닌 공단과 사인 간 일반채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개정안에 따라 유사한 강제징수 위탁 요구가 이어질 경우 관세청의 고유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관세청

-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은 조세의 부과처분 및 통관절차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과 관련이 없으며, 과세처분 또는 통관행위와 관련 없는 사유로 국민재산(수입 물품)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침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체납한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의 강제징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음.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운영한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액 소득자 및 자산가이면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3